

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으로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추진

2026-03-20

- 지난 3월 18일 정부는 「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」를 개최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위기에 강하고 신뢰받는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한 체질개선 방안이 논의됨
- 이 중 중복상장에 따른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거래소 상장심사시 중복상장은 “원칙적 금지+예외허용” 기조로 엄격히 심사할 예정
- 향후 분할 뿐 아니라 인수·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도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심사하고, 심사를 위한 종합적, 구체적 기준을 신설해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. 세부기준은 26년 2분기 내 의견수렴 후 확정
- 또한 자회사 중복상장시 모회사 이사회가 일반주주 관점에서 영향평가 및 공시 등을 수행하도록 의무 부과
- 필요한 거래소 상장·공시 규정 개정,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등은 26년 6월 내 추진

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

구분	추진과제
신뢰	“주가조작·분식회계 = 패가망신”, “부실기업 = 퇴출” 원칙 착근 ① 주가조작 적발역량 및 처벌 강화 ② 회계부정 엄단 등 회계투명성 강화 ③ 자본시장 평가인프라 기관의 객관성·공정성 제고
주주보호	주주 중심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주주권익 확립 및 투자자 감시 강화 ① 중복상장 원칙금지 ② 낮은주가 방지 등 기업가치 훼손 방지 1) M&A시 공정가액 산정, 2) 저PBR 기업 가치제고, 3) 보유자산 재평가 ③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로 기관투자자 감시기능 강화
혁신	혁신기업의 단계별 성장사다리 조성을 위한 시장개편 추진 ① 코넥스 시장의 인큐베이팅 기능 활성화 ②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및 역동성 제고 1)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 2) 모험자본 생태계(외수시장) 개선을 통한 상장 전 기업성숙 지원 3)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로 역동성과 경쟁력 제고 ③ 국민성장펀드 및 대형IB 모험자본 공급 본격 가동
시장접근성	국내외 자금이 자본시장에 장기·안정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한층 개선 ① 세제지원 신상품 조속 출시 등 국내 장기투자 기반 마련 ② 외환·증권시장 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촉진 ③ 토권증권을 통한 디지털 자본시장 확대

중복상장 범위 및 심가기준(안)

범위(안)

- ① 상장회사의 외부감사법상 종속회사 또는 ② 상장회사의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(손자회사 등 포함)를 상장하는 경우

구체적/종합적 기준(안)

(상장필요성)	상장추진 배경, 독립적 자금조달 필요성, 대안 여부, 자회사의미래성장성, 자본시장 발전 측면에서 의의
(주주소통)	주주가지 제고계획 공시, IR, 주주간담회, 주주 설문조사, 소통절차의 투명성 및 정당성,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여부 등
(주주보호)	모·자회사 관계형성 배경 및 경과, 모회사의 자회사 성장 기여도, 모회사 자산·매출·이익 등에서 자회사 비중, 상장시 주권회색 정도, 지배주주-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여부,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여부 등
(경영·영업의 독립성)	모·자회사 매출처·사업모델 등의 동일성, 공급망에서의역할, 독자적 제품개발 및 사업화 여부, 이사회·경영진의 독립적 구성, 겸직·인력교류, 자회사 이사회의 실질적 심의·의결 여부 등

⇒ 종합심사하여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 (“원칙금지·예외허용”)

자료: 금융위원회, SK증권

COMPLIANCE NOTICE

작성(최관순)은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중복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투자 판단 3단계(6개월 기준) 15% 이상 > 매수 / -15% ~ 15% > 중립 / -15% 미만 > 매도